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1239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김정원

피고B

변론 종결2022. 5. 13.

판결 선고2022. 6.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398,0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98,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채권의 발생

-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3. 3. 피고의 자녀 C에게 3,500,000원을 대출이율 연 36.5%, 연체이율 연 43.8%, 대출만기일 2013. 8. 30.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후 C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D는 2013. 2. 27. E 주식회사에 위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3. 3. 5.경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8.경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2) 원고는 2019. 6. 4.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19가소573733 사건, 이하 '관련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9. 11. 28. "C는 원고에게 6,103,429원과 그 중 1,921,849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2. 17. 확정되었으나, C의 추완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21나38254 사건)에 계속 중이다.
- 3) 2021. 3. 8.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액은 7,398,036원(= 원금 1,921,849원 + 이자 5,476,187원)이다.

나. 상속 및 등기

-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1. 2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G, 위 C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상속지분 피고 3/7, G, C 각 2/7).
- 2) 피고와 G, C는 2017. 3. 6.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G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각각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6. 접수 제510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

- 1)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피고는 H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2018.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20. 접수 제1394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12. 25. 기준 시가는 520,000,000원이다.

-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17. 3. 6.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50,000,000원이었다. 위 등기는 2018. 7. 20.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4) 또한 위 H는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56,4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5) 한편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2015.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2017. 3. 6. 기준 체납액은 485,310원이었다. 위 등기는 2017. 3. 24.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C의 무자력

- 1)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위 가.항 기재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2) 한편 C는 2015. 11. 2.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서울회생법원 2015개회168791 사건, 이하 '관련 개인회생 사건'이라 한다), 신청 당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채권이 포함되었다. C는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6. 4. 2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인가 이후 변제액 미납을 이유로 2018. 5. 2.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 1) D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한 대출에 따라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대출을 받은 2011. 3. 3. 이후 소멸시효 중단 없이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상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C가 관련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에 따라 신청 시점인 2015. 11. 2.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는바(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일인 2018. 5. 2.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4. C를 상대로 관련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통지가 C에게 송달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두 차례 양도에 관한 통지가 채무자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C에게 위 각 우편으로서 유효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련 양수금 소송에서 양도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C가 최소한 추완항소 과정에서 이를 열람함에 따라 유효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위 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리고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제3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로 추인되는 520,000,000원에서 I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인 150,000,000원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인 485,310원을 공제한 369,514,690원(= 520,000,000원 ~ 150,000,000원 ~ 485,310원)의 2/7 지분에 해당하는 105,575,625원(= 369,514,690원 × 2/7, 원 미만 버림)인데, 원고가 구하는 2021. 3. 8.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 7,398,036원이 위 공동담보 가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는 7,398,0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398,0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전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C를 포함한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상속지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그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진호

별지

1) 원고는 당초 위 H에 대하여도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이후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